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강서구 소속 장상기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산지·구릉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 및 높이, 조경면적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과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구 해제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□ 현재 서울시는 현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은 3층 12m, 건폐율 30% 이하의 건축물만을 허용하고 있으며, 예외적으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과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본 조례의 발의를 통하여,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,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